

FOCUS

레미콘 품질관리 주의 필요

건설현장에 레미콘 타설전 레미콘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드는 공시체관리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 레미콘의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험중 압축강도는 구조물의 안정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D사 조모 품질관리실장은 현장에 방치된 경우의 레미콘 압축강도와 시험실로 운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통상 레미콘은 현장에 납품이 되면 레미콘 인수검사때 시험사와 감리원의 입회하에 압축강도 측정용 공시체를 제작, 현장에 방치한 후 다음날 수거하고 있으나 현장에 따라 공시체 제작후 곧바로 승합차에싣고 시험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방치된 공시체와 실험실로 운반된 공시체는 온도와 습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원인으로 강도발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험을 마친 결과 방치된 공시체의 경우 7일 압축강도 발현율이 210kg/cm^2 에서 66% 보였으나 실험실로 운반한 공시체는

7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8일 강도에서는 방치한 공시체는 121%로 나타났으나 실험실 운반공시체는 128%로 공시체의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운반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응결된 전후의 상태에서 일시적 진동을 가하게 되면 강도가 증대되는 성향을 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험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운반된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방치된 공시체의 압축강도보다 7%정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시체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 제조물품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지난 12월 2일 조달청에서는 구매하는 제조물품의 낙찰하한율을 73%에서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 입찰 공고한 물품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 기준에서는 영세제조업체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적격심사 항목의 입찰가격 평가

때 적용하는 평점산식을 개정 73%에 머물던 낙찰하한율을 10억 원 이상의 제조입찰은 80.5%로,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입찰에는 83%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던 것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등 각종비율과 평점계산때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개정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제출하는 재무상태 관련서류는 최근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외에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도 인정키로 했다.

제조물품 낙찰하한율과 관련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에 따른 품질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면제 대상업체도 예정가격대비 80%이하로 투찰할 경우 적격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SOC신규공사 조기발주 유도

지난 12월 8일 조달청은 최근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내년도 계획된 공공시설공사의 조기발주를 적극 유도키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작성지침'을 수요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중 발주가 예정돼 있는 공공공사 중 신규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상반기 중 계약 요청이 이뤄져 1/4분기 중 적어도 4조 원 이상이 계약 집행되도록 하는 계획이 마련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신규공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계약요청을 하되 늦어도 10월 15일까지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해 발주를 의뢰토록 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로 2차연도 이후에 계약되는 공사와 수의계약 빌주대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1분기 안에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늦어도 상반기내에는 계약이 완료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조달청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요청 할 공사에 대해 내년 1월 20일 까지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집행계획을 접수받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전체집행계획을 예시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전년보다 3.5% 늘어

지난 12월 8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다소 활기를 띠며 전년 보다 3.5%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됐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투자가 금년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지만 97년과 비교하면 80%수준에 머물러 금년도의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98년 건설투자증가폭이 10.1%감소, 99년 10.3%줄어든데 이어 2000년도 3.4%감소하여 3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 건설투자가 증가할 경우 4년만에 바닥에서 벗어나는 셈이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가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같은 기간의 침체가 심했던 반사효과로 5%내외의 증가를 보이고 하반기에는 이보다 낮은 2.5%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예산의 증가와 건축허가면적의 증가로 건물건설도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실제로 건설투자는 72조 원(95년 불변가격기

준)에 그쳐 지난 97년 89조 3천억원의 80.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 추이는 1분기 7%, 2분기 4.7%, 3분기 3.5%, 4분기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에도 내외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연간 총생산율은 5.3%로 낮아질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 역시 고유가에 따른 영향과 에너지가격 개편을 위한 유류가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7%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01년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 분	1999		2000			2001	
	년간	1/4	2/4	3/4	4/4	년간	년간
GDP성장율	10.7	12.7	9.6	9.2	6.5	9.3	5.3
민간소비	10.3	11.1	8.9	5.7	4.0	7.3	4.1
설비투자	38.0	63.6	41.3	32.0	19.6	37.7	2.8
건설투자	-10.3	-7.0	-4.7	-3.5	0.5	-3.4	3.5
상품수출	19.0	29.1	23.5	25.4	15.9	23.1	12.7
상품수입	32.8	35.5	20.3	22.2	10.6	21.5	11.9

외국 건설사 국내진입

지난 12월 2일 관계기관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다이세이건설 싱가포르의 이콘코퍼레이션 미국의 코스모폴리탄 등 외국 대형건설업체들이 국내시장진입을 위해 최근 서울시에 건설업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본의 마에다 건설도 국내건설업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국건설업체들의 국내건설업 등록신청이 늘어난 것은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생겨난 공백을 이용해 국내시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내진입 건설사들을 살펴보면 다이세이건설은 전년 1조1천281억엔의 수주고를 올린 일

본 건설업계 2위의 업체로 국내 삼일회계법인을 등록대행업체로 삼아 지난 11월 서울시에 건설업등록을 신청했으며 시에 제출한 자본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해 향후 시공능력에서 상위업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의 이코코퍼레이션은 국내 민자사업 참여를 위해 건설업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의 코스모폴리탄은 미국의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건축공사를 주로 해왔으며 향후 250만불 규모의 미군기지공사수주를 목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국내 건설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건설업체들이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외국건설업체들이 건설업등록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내건설사들의 맞고 있는 위기 속에 틈새시장을 노린 진입전략이라고 건설업체 관계자는 폴이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용기준 조정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20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적용 기준을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건설업체에만 적용하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로 탄력적으로 운용, 기업의 지원효율을 높이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풀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 금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건설업을 비롯한 광업, 운수업의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종전의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로 조정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300인이 넘더라도 자본금이 30억원 이하인 건설업체인

경우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또 이번 개정에서 농업등 1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 추가, 지식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기준을 업종별로 단순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조·광업 업종이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 상

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나 자산총액 80억원 이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어음할인 우대, 세제지원등 기본적인 지원사항 외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우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